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의견조회본)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이라한다) 및 그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험법》 및 그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물 및 식물검역법》 및 그 시행조례《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과 《국무원의 식품등 생산물안전 감독관리 강화관련 특별규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다음 활동에 대해서는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一） 해관은 그 직능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입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제외) 생산경영활동의 감독 관리

（二） 수출입 식품의 검험, 검역 및 감독 관리

제3조 수출입 식품안전 업무는 안전을 제1의 원칙으로 견지하며, 예방 우선, 위험관리, 전과정 통제 및 국제 공조를 실행하며, 과학적이고 엄격하며, 효율적이며 편리하고, 조율되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현대적인 통치제도를 건립합니다.

제4조 수출입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경영한 수출입식품의 안전을 책임진다.

수출입 식품 생산경영자는 중국과 유관국가 혹은 국제기구의 다자/양자간 합의, 중국 법률법규와 국가 식품안전 표준에 따라 수출입 식품 생산경영활동에 해야 하며, 법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아, 수출입 식품안전을 보증하며, 사회와 공공 책임과 관련 사회책임을 진다.

제5조 해관총서는 전국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업무를 관할하며, 현지의 해관은 관할구역 수출입 식품안전의 감독관리업무를 담당.

제6조 해관은 수입식품에 대한 합격평정을 실시하며, 수출 식품에 대해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한다. 해관은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여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7조 해관은 기업신용관리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입 식품 생산 운영자에 대한 신용 관리를 시행한다

제8조 해관은 수출입 식품안전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안전법률 및 식품안전관련 국가표준과 지식의 보급을 전개하여 수출입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식과 자기 보호 능력을 강화 해야 한다.

해관은 식품안전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국내외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등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입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구조를 조성한다.

제9조 수출입 식품안전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해관 요원은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상응 자격을 획득하여 업무중 직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2장 식품수입

제10조 수입식품은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아직없는 식품의 수입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공포한 일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련 표준 요구 에 부합해야 하며, 일시적 적용 가능한 표준이 발표되기 전에 아직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은 수입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은 《식품안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위생행정부서의 새로운 식품원료 위생행정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11조 가공 후 재수출에 사용되는 모든 수입 식품원료에 대해 해관은 재수출국 국가(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요건에 따라 검사할 수 있으며, 검역 요건은 현재의 관련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제12조 해관은 수출입 상품검사 관련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 합격 평정을 실시한다.

수입식품 합격평정 활동에는 포함하되 제한하지 않는 것 : 외국(지역)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평가 및 심사, 외국 생산기업(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및 보관기업, 이하 총칭하여 "해외 생산기업"라 함)의 등록, 수출입업자(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 식품 수입업자, 이하 "수출입업자"라 함)의 등록과 합격 보증, 수입 동물 및 식물 검역승인, 수출국(지역) 공식 증명서 등 부속되는 합격증명검사, 서류심사, 현장검사, 감독 및 샘플검사, 수입 및 판매 기록 검사 및 각 항목의 조합.

제13조 해관총서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지역)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과 식품안전상황에 대하여 평가 및 심사를 할수 있으며, 평가 및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검사 및 검역 요건을 확정한다.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총서는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외국에 대해서 평가 및 심사를 할 수 있다.

(1) 외국(지역)이 중국으로 처음 수출하는 어떤 유형(종류)의 식품 신청.

(2) 외국(지역)의 식품안전, 동물 및 식물검역정책 법률법규, 조직기구 등 의 식품 안전, 동물 및 식물 검역 정책, 법률, 규정 및 조직 구조에 중대한 조정 진행.

(3) 외국(지역)의 관할부서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어떤 유형(종류)의 식품에 대해 주요 수입검역요구조건에 조정 신청.

(4) 외국(지역)에서 중대한 동물 및 식물 질병발생 상황 또는 식품안전사고 발생.

(5) 해관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중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 동물 및 식물의 전염병 혹은 식품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여김.

(6) 기타 평가 또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

제15조 외국(지역)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평가 및 심사에는 주로 다음의 평가 및 확인이 포함된다.

(1) 식품 안전, 동물 및 식물 전염병 관련 법률 및 규정;

(2) 식품 안전 감독관리 조직기구;

(3) 동물 및 식물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

(4) 병원성미생물, 농업용 동물용의약품 및 오염물질 등 관리 통제;

(5) 식품 생산가공, 운송 및 보관의 안전 및 건강 관리;

(6) 수출 식품 안전의 감독관리;

(7) 식품 안전방호, 추적 및 리콜 시스템;

(8) 조기 경보 및 응급 체계;

(9) 지원 능력;

(10) 기타 동물 및 식물 전염병 및 식품 안전과 관련된 상황.

제16조 해관총서는 서면 검사, 비디오 검사, 현장 검사 및 기타 조합을 통해 평가 및 심사를 수행 할 전문가를 조직 할 수 있다.

제17조 해관총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평가 및 심사중인 국가(지역)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서면검사하며, 내용이 진실성, 완전성 및 유효성이 포함된 자료인지를 검사한다. 신청자료 상황에 근거하여, 해관총서는 신청국가(지역) 주관부서에 보충, 결핍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서면 검사가 완료된 후 전문가 팀은 서면 검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8조 해관총서는 비디오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할 수 있다. 해관총서는 전문가팀을 조직하여, 평가와 심사대상 국가(지역)이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 식품안전상황 등 내용에 대하여 인터넷 동영상 등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과 심사중인 국가(지역)은 인터넷 동영상검사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동영상검사가 완료된 후 전문가 팀은 동영상검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동영상검사 상황에 근거하여, 해관총서는 평가와 심사중인 국가(지역) 및 관련 기업에게 동영상검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해관총서는 현장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할 수 있다. 해관총서는 전문가팀을 조직하여 평가 및 심사중인 국가(지역)에게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유효성, 식품 안전 상황 등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평가 및 심사중인 국가(지역)는 현장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현장검사가 완료된 후 전문가 팀은 현장검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장 점검 상황에 근거하여, 해관총서는 평가 및 심사중인 국가

(지역) 관할 부서 및 관련 기업에게 현장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평가과정에서 평가 및 심사중인 국가(지역)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평가 및 심사가 종료되고, 해관총서는 평가 및 심사중인 국가(지역)의 관할 부서에 통보한다.

(1) 설문지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설문지 및 관련 자료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2) 해관총서로부터 보충정보 및 자료 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시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중대한 동물 및 식물 전염병 또는 주요 식품 안전 사고와 관련된 비상 사태 발생;

(4) 중국 현장 검사 직원이 동영상 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완료하는데 협력하지 않은 경우;

(5) 평가 및 심사 대상 국가(지역)가 자발적으로 평가 및 심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

(6) 기타 상황이 중지가 필요하다고 간주될 때.

제21조 해관총서는 외국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평가와 심사과정중에 위험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평가와 심사의 다음 업무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위험 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평가와 심사를 중지한다.

제22조 해관총서는 수입식품의 해외 식품 제조업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기업의 등록, 감독 및 관리를 실시, 등록된 기업의 목록을 공표한다.

제23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은 해관총서에 등록을 한다. 식품수입업자는 상공 등록지의 해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수입 식품의 수출업자의 명단을 공포할 책임이 있다.

제24조 식품수입업자는 다음 내용에 중점을 둔 해외 수출업자, 해외 생산 기업 심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외 수출업자는, 해외 생산기업은 식품 안전 위험 통제조치 상황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2) 해외수출업자, 해외생산기업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이 중국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며,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식품 수입업자는 심사 합격한 해외수출업자, 해외생산기업에서 식품을 수입해야 한다.

해관은 법률에 따라 식품수입업자의 심사 활동 상황을 관리감독조사를 하고, 법률에 따라 식품 수입업자가 법률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의하거나 요구해야합니다. 식품 수입업자는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충실히 제공해야합니다

제25조 법에 따라 입국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해관은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와 해관총서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제26조 해관은 법률에 따라 검역 심사승인이 필요한 수입식품에 대하여 검역 심사승인 관리를 시행한다. 식품수입업자는 무역계약 또는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입국 동물 및 식물 검역 허가를 신청하여 취득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법률법규의 관련규정 및 국무원 관련부서에서 발행하는 금지물 목록에 근거하여 검역 심사 승인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을 작성, 조정 및 발표 한다.

제27조 식품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시, 해관은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 전에 검사를 수행 할 수 있다. 해관은 사전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사전 검사를 통과한 수입식품에 대해 통관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사전검사를 하는 수입 식품의 범위, 절차 및 요구 사항은 해관총서에서 정하여 공표한다

제28조 지정항구로 수입요구가 있는 식품은 해관총서가 지정한 항구로 수입해야 한다. 지정항구로 수입해야 할 식품목록, 지정항구 및 그 지정감독장소의 건설요구와 명단은 해관총서에서 작성하여 공표한다.

제29조 지정감독장소의 건설은 지역경제 발전과 국제무역 발전 수요, 항구의 자연조건과 교통물류 기초 상황, 수입 안전 보장 능력 상황 등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건설계획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에서 제시해야 한다

지정 감독 장소의 소재지 인민정부는 식품 안전 보장 방안을 제정하여 실시하여, 지정 감독 장소의 기초 능력 건설 작업 체제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항구자원을 통합하며, 항구내 각 연계 검사 단위와 관리 부서를 조정하여 지정 감독 장소 관리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0조 수입 식품에 대한 지정 감독 장소의 건설 및 관리는 법에 따라 해관총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제31조 식품 수입업자와 그 대리인은 법률법규의 규정 및 해관총서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가지고 해관에 신고해야한다.

(1) 감독 서류;

(2) 입국 동물 및 식물 검역허가증 등 승인 서류;

(3) 합격 증명 자료;

(4) 수입식품 해외 수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등록, 수입식품의 수입업자 등록,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등 기업 자격 문서

신고 요건 및 첨부 서류 제출 방법은 해관총서가 결정하고 공표한다.

제32조 제31조 1항 （一）에 규정된 감독관리 문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보건식품의 등록증서 또는 구비서류, 특수의학용도 조제 식품 등록증서와 유아용 조제 분유 등록증명서 등 특수식품에 필요한 감독 증명서;

(2) 유전자 변형 식품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안전 증명서;

(3) 위해 마땅히 취득해야한 기타 감독증명서

제33조 제11조 제1항 제（三）에 규정한 합격증명 자료는 다음과 같이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적합성 선언 또는 합격 보증;

(2) 실험실 검사 보고;

(3) 수출국가(지역)의 주관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작성한 증명서;

(4) 식품수입시 보유해야 할 기타 합격 증명자료.

수출 국가(지역) 주관 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그 서식, 내용 및 발급방식은 해관총서와 수출국가(지역) 주관 부서가 결정한다.

제34조 식품수입업자, 위탁받은 통관업체는 해관에 사실되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및 규범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첨부서류의 원본서류를 대조확인이 필요한 경우, 식품 수입업자 또는 위탁받은 통관업체는 즉시 제출해야 하며, 보충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식품 수입업자 또는 위탁받은 통관업체는 해관 요구에 따라 신고서를 보충해야 한다.

제35조 해관은 위험요소 관리 지침 등 감독관리 요구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현장검사 내용에는 포함하되 다음과 같은 측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1) 운송수단, 보관장소가 안전위생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가 신고정보 및 부속서류와 일치하는지, 화물의 실제상황과 신고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3) 동식물성 식품, 포장물 및 포장재가《수출입 동식물검역법 시시조례》제212조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4) 내외포장이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표준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여부, 무독, 무해한 재료 사용 여부, 오염, 파손, 침습, 침투의 유무;

(5) 내외 포장의 라벨, 표시 및 설명서가 법률법규의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해관총서가 규정하는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6) 내외 포장상의 표시내용이 신고정보 및 부속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7) 식품 감관성상에 부패 변질, 유지산패, 곰팡이가 끼고 벌레생긴것, 오물 불결, 이물질 섞기, 가짜 섞기, 맛 이상, 분말덩어리, 이상분층, 혈빙, 얼음 과다, 육안적으로 보이는 기생충 포낭, 생활해충 등 이상 여부;

(8) 냉동냉장식품 검사결과 신선도, 중심온도가 요구에 부합하는지, 병변이 있는지, 냉각체인 온도조절 설비가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온도기록이 요구에 부합하는지, 필요한 경우 찌기(Steaming) 시험 수행.

제36조 해관총서는 연간 국가 수입 식품안전감독 샘플검사 계획과 특별 수입식품 안전감독 샘플검사 계획을 수립한다.

해관총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샘플채취, 검사 및 처리 등을 실시한다. 해관 직속기관은 수입식품 안전감독 샘플계획과 특별 수입식품 안전감독 샘플링 계획요구에 따라 관할구역의 실제 상황을 종합하여 본 관할 구역의 실시 방안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입식품 안전상황에 따라 해관총서에 보고하고 후속방안을 실시한다.

해관 직속 하부세관(2차기관)은 연간 국가 수입식품 안전감독 샘플링 계획을 담당하고 특별 수입식품 안전감독 샘플 계획과 해관 직속기관의 수입식품 감독 샘플 보충계획을 실시한다.

제37조 해관은 검사 샘플링 계획 등에 관한 요구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감독 샘플링을 실시한다.

제38조 수입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시는 중국 법률, 법규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하며 중국어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수입되는 냉동 육류제품에 대해서는, 내외포장에 산지 국가(지역), 품명, 생산업체 등록번호, 생산 승인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겉포장에는 규격, 산지(구체적으로 주/성/시까지), 목적지, 생산일자, 유통기한, 저장온도 등의 내용을 중국어로 표시하고,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국가(지역)의 정부당국 검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 수산물의 경우, 내외 포장에 견고하고 명확하게 분별이 용이한 중문과 영문 표시가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 상품명과 학명, 규격, 생산일자, 승인번호와 보존조건,
- 생산방식(해수조업, 담수조업, 양식), 생산지역(해수조업, 담수조업 국가 또는 지역, 양식제품이 소재하는 국가 혹은 지역)
- 생산가공업체(어획선·가공선 포함) 명칭 및 번호
- 행선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

수입 건강식품, 특수 식이식품의 중국어 라벨은 최소한으로 포장위에 인쇄해야 하며, 부착해서는 안 된다. 수입식품의 내외포장은 특수표시규정이 있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 수입식품은 항구에 도착한 후에는 해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관리 감독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정 또는 허가된 감독 장소는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 표준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 지정 또는 허가 요구사항 및 절차는 해관총서에 의해 제정되고 공표되어야 한다.

제40조 수입식품이 합격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하고, 특히 안전·건강·환경보전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선적물을 파기 또는 반송하도록 명령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기타 항목의 부적합은 세관이 감독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기술처리를 완료할 수 있으며, 재점검을 거쳐 합격한 후에야 판매·사용이 가능하며, 식품수입업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기술처리를 완료할 수 없으며, 해관은 식품수입업자에게 파기 또는 운송을 책임지도록 한다.

제41조 식품 수입업자는 식품의 수입과 판매 기록 제도를 수립하여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 생산 또는 수입 승인번호, 유통

기한, 역외 수출업자와 구매자의 명칭, 주소를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 보존 기간은 식품의 유통기한 만료 후 6개월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품질보증 기간이 없는 경우, 보존기간은 2년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제42조 수입 식품이 법률, 법규 및 식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거나, 식품 안전 문제로 고발되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식품 수입업자는 《식품안전법》 제 603조 제2항, 제3항 및 제94조 제3항에 따라 즉시 수입과 시중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이미 시판되고 있는 식품은 리콜하고, 해당 시장 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며, 식품 리콜과 처리 상황을 소재지 해관에 보고 해야 한다.

식품 수입업자가 규정에 따라 리콜하지 않거나 판매를 중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603조 제5항에 따라 리콜 또는 판매·사용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3장 식품수출

제43조 식품수출 생산업체는 수입국(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에 부합하도록 식품을 수출해야 하며,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하는 국제조약, 협정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수출식품은 국제조약, 협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위에서 요구한 것이 없다면, 수출 식품이 중국의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44조 수출 식품 감독 관리 조치는 포함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은 제한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수출 식품 원료를 재배하는 농장

(식물 등)과 양성장(동물 등) 준비상황, 수출 식품 생산업체 준비상황, 기업심사, 서류심사, 현장검사, 샘플 추출, 항구검사, 국외에 통보하는 검사 항목 등이다.

제45조 수출식품 원료의 재배농장 및 양성장은 반드시 소재지 세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이 안 된 종자와 양성장의 원료는 수출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출식품 원료의 종자와 양성장등록의 구체적인 요구와 절차는 해관총서에서 작성하여 공표한다. 수출식품 원료를 종묘생산하거나 양성하는 양성장 등록의 수출식품 목록과 등록된 원료의 종묘생산, 양성장 명단은 해관총서에서 일괄 공표한다.

홍콩과 마카오에 공급되는 가공원료인 채소는 반드시 등록된 업체에서 조달해야 하며, 해관총서에서 달리 규정된 소품종 채소는 제외한다.

제46조 해관총서는 법에 따라 종묘와 양식장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등록된 종묘와 양식장에 대한 감독 관리는 서면 심사, 현장 검사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등록된 종묘나 양식장은 반드시 생산 할때 마다 원료공급 증빙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제47조 등록된 종묘 재배장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1) 종묘 배양장용지를 합법적으로 경영한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소지

(2) 토지는 상대적으로 연결이 되어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주위는 천연 또는 인공적인 분리대(망)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현지 해관이

실태에 따라 확정한 토지 면적에 부합해야 한다.

(3) 대기, 토양 및 관개용수는 국가의 관련 표준에 부합하며, 종묘 재배장 및 주변에는 재배 원료의 품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4) 배치된 인원은 농약 등 농업 투입품의 관리를 담당하며, 독립적인 농업 투입품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되며, 농업 투입품은 중국 또는 수입 국가(지역)의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하여야 한다.

(5) 완벽한 품질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려면, 조직 기구, 농업 투입품 사용 관리제도, 전염병 모니터링 제도, 유독성 유해 물질 통제 제도, 생산과 이력관리 제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배치는 생산 규모에 적합해야 되며, 식물 보호 기본 지식을 갖춘 전임 또는 파트타임 관리자를 구비해야 한다.

(7)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48조 등록된 양성장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1) 동물방역조건 합격증명을 취득하거나, 어업행정 주무부서의 양식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주변 500m 범위에는 축산물 축사, 병원, 화학공장, 쓰레기장 등의 오염원이 없으며 외부환경과 격리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내부 환경위생이 양호해야 한다.

(3) 배치가 합리적이고 위생 방역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배수의 교차 오염을 피해야 한다.

(4) 독립되고 분리된 약과 사료 창고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창고는 청결하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 되며 출고 등록을 기록하는 전담자가 있어야 한다.

(5) 효율적인 동물위생방역과 양성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상시위

생관리제도, 전염병예방제도, 투약관리제도, 사료와 첨가제 사용관리제도, 반출입장관리제도, 생산과 이력관리기록제도 등을 구비해야 하고, 양성장의 각종 품질안전관리 기록이 사실적이고 완전하게 이력관리가 되어야 하며, 양성장 내에 비치되어 사용되는 사료 및 수약 등의 농업 투입품이 수입국(지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6)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49조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국내 식품·식용농산물 관련 생산경영의 자질을 확보해야한다.

제50조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반드시 상공인 등록지 해관에 등록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은 해관총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51조 수입국가(지역)에서 그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업체가 등록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수출식품 생산업체에서 등록지 세관에 신청하면, 해관총서가 일괄적으로 대외추천을 한다.

해관은 기업의 신용·감독 관리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대외 추천 등록 작업을 실시한다. 대외추천등록에 관한 절차와 요청은 해관총서에서 작성하여 공표한다.

제52조 수출 식품 생산 업체는 이력추적이 가능한 식품 안전 위생 통제 체계를 완벽하게 수립하고, 식품 안전 위생 통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 가공, 저장과정이 지속적으로 중국 관련법규, 수출식품 생산업체 안전위생 요구사항, 수입국가(지역) 관련법규 요구사항 및 관련 국제조약, 협정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원료종묘 양식장 심사제도, 공급업체 평가

제도, 수입품 검사기록제도, 생산기록부제도, 출하검사기록제도, 수출식품 흐름기록제도, 부적합식품 처분기록제도 등을 비치해야 한다.

관련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기한이 식품 유통기한보다 6개월이나 더 적어서는 안 되며, 품질보증 기간이 없는 경우, 보존기간은 2년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53조 수출 식품 생산 업체는 수출 식품의 포장과 운송 방식이 안전 위생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54조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운송 포장과정에 생산업체의 등록번호, 제품명, 생산 승인번호와 생산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해관은 발행한 증표에 위에서 기술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수입국(지역) 또는 계약에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제품의 이력추적 적용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직속 세관의 동의를 거쳐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표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5조 해관은 관내 수출 식품 생산 업체의 식품 안전 위생 통제 체계 운영 상황을 감독 검사해야 한다.

감독검사는 서면심사, 현장검사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수출식품의 해외 검증, 감독 샘플링, 현장실사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 수출식품 생산업체, 수출업자는 법률, 법규 및 세관의 총서 규정에 따라 산지 또는 집산지 세관에 신고 전 감독 신청을 해야 한다.

제57조 산지 또는 집산지 세관에서 식품 수출 신고 전 관리 신청을 접수한 후 검사 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수출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검역 관리 규정과 요청에 따라 현장 검사와 감독 샘플링을 실시한다.

제58조 해관총서는 연간 국가수출식품안전감독 샘플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관 직속기관은 수출식품안전감독 샘플링 계획에 따라 실태를 조합하여 본 관할구역별 실시방안을 수립하고, 본 관할 수출식품안전상황에 따라 본 수출식품감독 샘플링 계획을 수립하여 해관총서에 보고하여 등록한 후 시행한다.

해관 직속 하부세관(2차기관)은 국가수출식품안전감독 샘플링 계획과 해관직속기관의 수출식품안전감독 샘플링 계획 시행을 담당한다.

제59조 해관은 샘플링 감독 등에 관한 요구에 따라 수출식품을 표본 추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실험실로 보내 검사를 실시한다.

제60조 수출 식품이 수출 요구에 부합할 경우, 해관은 중국과 관련국의 다자간 합의에 따라, 수입국(지역)의 증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 한다.

수출 식품의 수입 국가(지역)는 증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으며, 해관의 승인을 거쳐 직속 세관에서 증서를 변경할 수 있다.

수출 식품이 수출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에서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한다. 법에 따라 기술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세관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취급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용한다.

법에 따라 기술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처리를 하여도 여전히 불합격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을 불허한다.

제61조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의 수출입 화물 신고 관리 규정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수출식품 신고 전 관리감독의 결론에 따라, 관련 허가증 및 동봉서류와 관련 상업서류, 그리고 해관총서가 정하는 기타 수출서류는 해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62조 항구에서 해관은 위험 통제 요구에 따라 수출 식품에 대해 구안 검사를 실시하며, 항구 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은 수출할 수 없다.

제63조 해관총서는 국제기구, 국외 정부 기관이 통보한 중국 수출 식품에 대한 위험 조기 경보 정보 및 기타 식품 안전 정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리스크 평가의 기초 위에서, 리스크 관리 원칙에 근거하여 샘플링 비율의 조정, 대외 등록 추천의 정지, 일시 정지 또는 수출 금지 등의 제어 조치를 실시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64조 해관총서는《식품안전법》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수출입 식품 안전 정보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각급 해관은 본 관내 및 상급기관이 지정한 수출입 식품 안전 정보의 수집과 정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라 본 관할 지역의 현지 정부, 관련 부서, 기관과 기업에 통보하고, 통보된 정보는 다른 지역의 것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즉시 해당 지역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해관에서 수집·회합한 수출입 식품 안전 정보는, <식품 안전법> 제100조의 규정 내용이외에, 해외 식품의 기술적 무역 조치 정보를 포함 한다.

제65조 해관은 수집된 수출입 식품의 안전 정보에 대하여 리스크를 연구하고 판정 결론을 내리고, 직능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리스크 심사의 결론은 본 관할 구역에만 관련된 것이므로, 적시에 본 관할 구역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조기 경보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통학적이고 전국적인 것에 관련된 사항은 즉시 해관총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관총서는 수집한 수출입 식품의 안전정보 및 직속 세관에서 보고한 심사결론을 리스크를 평가하여, 상정한 리스크 통제 조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6조 해외 식품안전사건이나 전염병 발생시 수출입 식품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수출입 식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가 발견될 수 있는 경우, 해관 직속기관은 지체 없이 해관총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해관총서는 상황에 따라 리스크 경보를 진행하거나 국무원 식품안전감독 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부에 통보한다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위험 경고 알림을 게시하여야 한다.

해관총서는 위험경고 통보를 할 수 있으므로, 각급 해관은 위험경고 통보에 근거하여 수출입 식품에 대한 엄격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7조 해관 서는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의 일부의

일환으로 연간 국가 수출입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수출입 식품 중 식품에 기인한 질병, 식품 오염과 유해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 및 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해관 직속기관은 국가 수출입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실시 방안을 제정한다.

또한 관할 지역의 실태를 종합하여, 국가 수출입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과 별도로 본 관할 수출입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해관총서에 등록한 후에 실시할 수 있다.

해관 직속 하부세관(2차기관)은 연도 국가 수출입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과 소속 직속 세관 수출입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의 실시를 담당한다.

제68조 해관은 본 방법의 제2장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증빙 심사, 현장검사와 샘플링 감독 검사 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행감사가 규정돼 있다.

위험 평가의 기초에서 해관은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경외 식품 생산업체 또는 국가(지역)의 중국에 향한 수출 식품에 대해 단속 강화와 자동 억류 등을 포함한 통제 조치를 엄격하게 실시할 수 있다.

제69조 경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건이 중국 역내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해관의 수입식품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이 발견되거나 기타 식품안전문제가 발견되면 해관총서와 직속 해관에서 현장 검사 비율을 높이거나 샘플링 비율을 감독하는 등의 제어 조치를 포함한 수입식품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제70조 단속 강화 과정에서 부적합한 수입 식품이 재발견되거나 수입 식품에 중대한 안전 위험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관총서와

직속 해관에서 수입 식품에 대해 자동 억류를 실시할 수 있다.

식품수입업자는 자동 억류를 실시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질 있는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보고서를 선적대로 점차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관은 식품 수입업자가 제공한 검사 보고서를 검증해야 한다.

해관의 허가 없이 자동 억류된 식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가져갈 수 없다.

제71조 다음과 같은 경우, 해관총서는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역외 식품 생산업체 또는 국가(지역)의 중국에 향한 수출 식품에 일시 중단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출국가(지역)에서 중대한 동식물의 전염병 발생, 또는 식품 안전상황의 중대한 변화는 중국에 향한 수출 식품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경우,

(2) 자동 억류된 수입 식품이 해당 안전, 건강, 환경 보호 항목에 부적합한 것으로 다시 발견된 경우,

(3) 수입 식품의 역외 생산 업체는 중국 관련 법률법규를 심하게 위반한 경우,

(4) 어느 역외 식품 생산업체 또는 어느 국가(지역)로부터의 수입 식품의 안전에 큰 위험이 있음을 나타낸 기타 정보가 있는 경우.

제72조 해관총서는 중국 내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수입식품에서 식품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52조가 적용되는 어떤 통제조치든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제73조 수출입 식품 안전 위험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춘 경우, 해관총서와 직속 해관은 위험 조기 경보를 해제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엄격한 통제 조치, 일시 중단 또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단속 강화를 실시한 식품의 경우, 정해진 기간과 규정된 강화 단속의 선적에서 부적합이 발견되지 않는 한, 위험 평가 기반에서 단속 강화를 해제할 수 있다.

(2) 자동 억류를 실시하는 식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위험 평가 기반에서 자동 억류를 해제할 수 있다:

a 수출국가(지역)는 예방조치를 취하였으며, 해관총서의 위험평가를 통해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식물의 전염병 발생 위험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경우,

b 자동억류 실시일로부터 규정된 시간, 규정된 자동 억류의 선적에서 부적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3) 일시 중단 또는 수입금지가 시행된 식품의 경우, 수출국가(지역)의 주무부서는 위험통제 조치를 취하였으며, 해관총서의 평가를 거쳐 요구사항에 부합하면 일시 중단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수입재개된 식품에 대하여 해관총서는 평가상황에 따라 자동억류, 단속 강화 혹은 관행 감독을 채택하다.

제74조 해관총서는 경외에서 발생한 중국 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 사건에 대해 국제통행법을 참고하거나, 평가 후 통제 불가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 조기경보통보 또는 위험경보고지를 직접 배포하고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시에 적시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보완하여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통제 조치를 조정한다.

제75조 해관총서는 전국 수출입 식품 안전 돌발 사건에 대한 응급처치 예비안을 제정하고 직속 해관은 본 관할 수출입 식품 안전 돌발 사건에 대한 응급처치 예비안을 제정한다. 발생한 수출입 식품의 안

전에 관한 돌발 사태에 대하여 적시에 해당 등급의 응급대응을 시동하고 조치를 취하며,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를 조정 혹은 중지한다.

제76조 해관은 수출입 식품의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법에 따라 수행할 때, 수출입 식품 생산사업자가 본 방법을 준수함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사찰을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1) 생산경영 업소에 입소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2) 생산경영되는 식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3)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한다,

(4)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가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증거가 있거나 불법 생산 경영에 사용되는 식품을 차압 혹은 압수한다,

(5) 불법 생산경영 활동을 하는 장소를 차압한다.

제77조 식품 수입업자는 본 방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등록을 처리할 때,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 수입업자 기업명, 기업 성격, 기업 주소, 법정 대표자, 연락자와 연락처, 등록한 식품의 종류 등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증명서류 등에 관한 자료로 상공등록지의 해관에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해관은 식품 수입업자가 등록 신청 과정에서 잘못된 등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미 등록된 내용의 변경이 시기적절하게 변경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거부하면 해당 식품 수입업자의 수입접수를 중지할 수 있다.

제78조 통과 식품은 해관의 통과 화물에 대한 단속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통과 식품이 국경을 넘는 동안 해관의 승인 없이 포장을 뜯거나 운송 도구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

통과 식품은 반드시 기한 내에 운송하여 국경을 떠나야 한다.

제79조 해관이 수출식품 단속을 실시하면서 안전문제를 발견하거나 수출식품이 경외에서 통보되면 생산지 또는 조립지 해관은 현지 정부와 상위 정부 식품안전 주무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해관은 해당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대해 유통기한 제한적 시정을 명령하며, 시정기간 내에 수출신고·철수 혹은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증명서"의 말소를 접수하지 않는 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80조 식품 수입업자는 해관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수출입 상품 재검사 방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실험실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관에서 재검사를 수리하지 않다:

(1) 검사결과에서 미생물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2) 재검사 백업 샘플이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3) 다른 이유로 인해 백업 샘플이 재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5장 법적 책임

제81조 허위 재료를 제공하고, 중국의 법률, 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만 아직 범죄가 되지 않으면 해관에서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원 이상의 물건의 경우, 물건값의 금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안전국가 표준이 아직 없는 식품을 수입하고 국무원(国务院)

위생행정부처의 결정한 임시 적용기준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범죄가 되지 않으면, 혹은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을 수입하고, 국무원(国务院) 위생행정부처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조항에 따라 처벌하다.

제82조 등록을 받지 못한 역외 식품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관에서 수입을 중지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물건 값의 금액의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수입식품의 역외 생산업체로 등록을 받은 업체는 검사 결과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관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이 아직 규정에 미달하거나 기타 위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다.

제83조 식품 수입업자가 등록한 내용이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해관에 변경 수속을 하지 않아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관에서 경고한다.

식품 수입업자가 등록할 때 허위정보를 제공하면 해관에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84조 검역 허가를 받아야 할 동식물원성식품(动植物源性食品)을 수입하면 법에 따라 검역 허가를 받지 않거나 검역 허가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으면 해관에서 5천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다.

제85조 식품 수입업자가 역외 수출업자나 생산업체의 심사 제도를 수립 및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관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절하는 자에게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심각한 경우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제86조 식품 수입업자가 식품 수입 기록과 판매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해관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절하는 자에게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심각

한 경우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제87조 수입식품은 안전·건강·환경·보호 항목에 부적합하고 식품 수입업자가 해관의 요구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을 하지 않지만 범죄가 아니 경우 해관에서 위법 소득을 몰수하여 만 원 미만의 물건은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 원 이상의 물건은 값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화한 단속 조치를 실시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건강·환경보호항목에 부적합한 것을 재발견하게 되면 전 조항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다.

제88조 해관은 수입 예비 포장 식품에 대한 단속에서 수입 예비 포장 식품에 중국어 라벨을 붙이지 않거나 수입 예비 포장 식품의 중국어 라벨이 법률·법규 및 식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게 되며, 식품 수입업자가 해관의 요구에 따라 폐기·반송·기타 기술 처리를 하지 않으면 해관에서 경고하거나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89조 해관의 허가 없이 수입식품을 해관에서 지정 또는 승인한 단속 장소에서 가져간 자는 해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 식품 수입업자는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한 식품을 리콜하도록 주관 부서에 명령한 후에도 리콜을 거부하며, 아직 범죄가 되지 않으면 해관에서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만 원 미만의 물건은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 원 이상의 물건은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에서 "식품안전법" 제129조 제1항

제(3)에 규정하는 “본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식품을 수출한다”는 규정에 속한 경우, 해관에서 “식품안전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해관의 감독을 거쳐 샘플링 하여 이미 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식품을 무단으로 교환한 경우,

(2) 수출은 가짜를 섞어서 진짜인 척하고, 나쁜 물건을 좋은 물건이라 속이고 혹은 불합격 수출 식품은 합격 수출 식품으로 사칭한 경우,

(3) 수출 식품 생산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생산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4) 수출 식품 생산의 등록 추천을 받지 못한 업체에서 생산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5) 수출식품 생산업체가 생산한 수출식품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기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6) 수출식품 생산사업자는 “식품안전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에 해당하며 해당 식품은 이미 수출되었지만 수입국(지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92조 본 방법의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대고 신고하지 않거나 해관의 수출입 식품 안전 단속을 회피하는 자는 해관에서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물품의 값의 5 퍼센트 이상 20 퍼센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출입 화물 수령·발송인이 통관업체에 위탁한 해관 신고사항의 진실을 규정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뢰인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해관 신고업체는 의뢰인이 제공한 상황의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심사하지 않거나, 업무 소홀로 인하여 본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관의 통관 신고업무 또는 영업을 6개월 동안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신고·등록의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신고업체에 대하여 2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3조 위조, 변조, 수출입 식품검사 검역증·인감·표지·봉식을 매매, 또는 변조된 수출입 식품검사 검역증·인감·표지·봉식을 사용하고 범죄 행위를 하는 자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에 해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물건 값의 금액만큼 벌금을 부과한다.

제94조 수출입 식품 생산업자, 해관 및 직원 등이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95조 수출입 식품 생산업자가 밀수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해관에서 단속을 강화가고 신고 접수를 일시 중단하는 등 통제조치를 취하다.

제6장 부칙

제96조 해관의 특수 단속 구역, 보세 단속 장소를 출입하는 식품 및 수출 식품 시장의 구매, 국경 지대 소액과 상호 무역 식품 수출입 식품의 안전 감독 관리는 해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7조 택배, 우편, 크로스보더, 그리고 여객 휴대 방식으로 식품을 수출입하는 것은 해관 총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98조 샘플, 선물, 증정품, 전시품, 원조 등 비무역적인 식품으로 수출입되는 경우 혹은 수입은 면세 경영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혹은 공사관의 자체사용, 공공용 식품, 공사관과 중국 업체의 외국 주

재원 등의 자체사용을 위해서 수출되는 식품은 해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다.

제99조 이 방법에서 지정한 수출입 식품 생산사업자는 중국 경내에 향한 식품을 수출하는 역외 생산업체, 역외 수출업자 또는 대리점, 식품수입업자, 수출식품 생산업체, 수출업자 그리고 관계자 등을 포함하다.

제100조 수출입 중의약재의 검사검역 단속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수출입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검사검역 단속은 해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본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련 법률, 행정 법규, 해관 규약, 공고 및 규범적 문서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101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은 해관총서에서 책임진다.

제102조 본 방법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수출입 육류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입출경 중의약재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수출 꿀 검사검역 관리방법", "홍콩마카오의 채소 제공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등의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